

연금저축 금융기관 변경안내

2016년 노사합의에 따라 연금저축 금융기관간 상품이동(계좌이동) 및 금융기관 내 상품변경을 시행하오니, 변경을 희망하시는 임직원께서는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기한 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신청기간 : 2019.4.1(월) ~ 4.10(수) 18:00까지 (기간엄수)
- 대상금융사 : 현재 회사에서 지원중인 금융기관 限
- 신청방법 :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이동/상품변경을 신청 후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ERP에 등재(매뉴얼 참고)
- 증빙서류(금융기관에 따라 서류는 상이할 수 있음)
 - ① 계좌이체 증명서(금융기관간 계좌이동이 발행하였음을 증빙)
 - ② 거래내역서(기존 계좌의 잔고 전액이 이체되었음을 증빙)
 - ③ 계좌사본
 - ※ 동일 금융기관 내 상품변경의 경우는 "②", "③"만 필요
 - ※ 단순 금액변경만 하는 경우는 증빙서류 불필요
- 신청시스템 : ERP > HR > 개인업무 > 복지후생 > 연금저축 > 연금저축(변경)
- 주의사항
 - ① 연금저축상품의 변경은 공지일 이후 개설(계좌이체 신규) 및 변경된 계좌만 허용하며, 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을 제외한 타 상품(IRP 등)으로 변경 시에는 회사 지원이 중단됨(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검증 시행)
 - ② 연금저축 계좌이동·변경 시에는 기존 계좌의 잔액 전체가 이동해야 함
 - ③ 회사에서 지원중인 복수의 계좌를 1개의 계좌로 통합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됨
(舊 KTF직원만 해당)
 - ④ 4월 1일 이전 변경 시에는 금융기관에 3월분 입금된 것을 확인 후 변경해야 함
 - ⑤ 기타 사항은 첨부된 Q&A 자료 및 신청화면상 주의사항을 참고

연금저축상품은 장기저축상품으로 과거와 현재의 수익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다른 사람의 선택이 아닌 본인의 투자성향, 노후자금 준비여력 등을 고려하시어 계좌이동·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